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2023. 11. 10.

문의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2-3480-1924)

양형위원회 11/10(금) 제128차 회의 결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3. 11. 10.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안(권고 형량범위 등)을 심의하였음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안 심의

-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및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각주 1), 2) 참조]

※ 위 권고 형량범위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양형기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명칭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

-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과 지식재산범죄와의 보호법익 차이 등 고려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안 심의(속행)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고,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며,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다음과 같은 권고 형량범위안 도출

01 ¹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2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02 ¹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2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양형실무와 사건 증가 추이,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¹⁾.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함
- 일반 스토킹범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두루 고려함. 가중

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²⁾

-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잠정조치 위반죄(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하고,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함

3.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

- 기술침해범죄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침해범죄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었음
-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는 달리 기술침해범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대유형으로 설정한 취지 고려
- 범죄군 명칭만으로 기술침해범죄가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권고 형량범위 심의는 속행 → 양형인자와 함께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

4. 공탁 관련 양형인자 검토 작업

○ 양형기준에 있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감경인자에서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음. 즉 공탁 자체는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아님

- 공탁 등 경제적 보상에 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더라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한 결과 양형에서 유의

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참작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상당한 피해 회복)라야 함

- 그러나 최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양형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양형위원회는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하여 검토 중임
- 양형위원회는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 반영 여부도 검토할 예정임

5. 향후 일정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은 1)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 2) 유형 분류 결정, ⇨ 3) 권고 형량범위 설정, ⇨ 4) 양형인자 설정, ⇨ 5)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3)에 대하여 논의
- 향후 다음 일정을 거쳐 양형기준이 확정될 예정
 - 2023. 11. 21. 제128-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기준)
 - 2024. 1. 제129차 양형위원 전체회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각 양형기준안 확정
 - 2024. 1. ~ 2024.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 진행
 - 2024. 3. ~ 2024. 4. 양형위원 전체회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 및 각 양형기준 최종 의결

6.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제128-1차 회의)

- 일시: 2023. 11. 21.(화) 오후, 대법원 회의실
- 안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
- 1)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따라서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됨(3년6월 × 1.5 = 5년3개월, 법률상 가중을 하지 않은 단일범죄 처단형에서의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전제로 함)
 - 2) 위 1)과 같은 이유로, 일반 스토킹범죄 최대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3년이 됨(2년6월 × 1.5 = 3년9개월, 법률상 가중을 하지 않은 단일범죄 처단형에서의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전제로 함)